202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 원 신 안 내



CONTENTS

- 1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 7 일반공모 사업유형별 상세 안내
- 15 기획공모 사업유형별 상세 안내
- 21 지원신청 방법 및 안내사항
- 29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 3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방법
- 79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예술 향유 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일반공모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사업내용	총예산	지원규모
창작 활성화 지원	-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예술창작 및 발표 지원	1,100	단체 최대 4천만원 개인 최대 1천만원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 장애인 예술 유망 프로젝트 집중 지원 - 장애인 예술 기획 창작 프로젝트 발굴 지원	500	최대 10천만원
문화예술 향수 지원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900	최대 4천만원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 동호회, 커뮤니티, 자조모임 등의 예술 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예술 활동 지원	200	최대 1천만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 유형별, 장르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600	최대 4천만원

※ 국제교류지원사업 공모일정 조정 안내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라 국제교류지원사업 공모일정을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오니 지원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모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사업내용	총예산	지원규모
장애인 미술행사 지원	 장애인 미술가의 발굴, 육성, 교류 등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시, 교류, 유통행사 지원 대표적인 장애인 미술 사업의 기획, 운영과정, 행사구성을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애인 미술행사 발굴 및 지원 	430	최소 1억 원 ~ 최대 3억 원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점자 등 정보 콘텐츠 제작(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가공 및 변환) 배포	100	최대 1억 원
장애인 특성화 축제 지원	-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운영	195	최대 1억 원

▶ 지원사업 신청 자격

일반공모

기금 유형	사업유형	지	원대상	사업기간	
ं⊓ π8	ЛΕΠΌ	단체	개인	사립기단	
국고보조금	창작 활성화 지원	장애	장애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장애		결과	
	문화예술 향수 지원	장애 비장애	_	발표일 ~ 2021년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장애	_	12월 31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 비장애	_		

기획공모

기금 유형	사업유형	지원대상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장애인 미술행사 지원	TINIO	결과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장애인 예술 단체	발표일 ~ 2021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 특성화 축제 지원	다시	12월 31일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단, 일부 사업유형의 경우 개인 신청 제한)
 - (개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 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제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유효성 검증절차 후 회원 가입 및 신청 가능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단체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 지원신청 안내사항

지원신청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사업 신청	~ 2021.1.29.(금) 18:00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발표일정	2021년 3월 초(예정)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개별 확인

• 안내책자 배포 안내

-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안내 책자〉를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선착순 배포 합니다.
- 장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문의 (※ 문의 시 아래 사업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
 창작 활성화 지원 유망 예술 프로젝트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02-760-9720
• 문화예술 향수 지원 • 커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02-760-9707
• 기획공모 (장애인 미술행사 지원,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장애인 특성화 축제 지원)	02-760-9706

일반공모 사업유형별 상세 안내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적 표현 권리 확대

사업내용

●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공연·시각·문학 등 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가(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 (단체) 최대 4천만 원
- (개인) 최대 1천만 원

지원분야

- (공연)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 등 장애인이 참여하는 공연 분야 창작 및 공연
- (시각예술) 회화·설치·미디어·조각·사진·융복합 등의 시각예술 분야 창작 및 전시
- (문학) 시·시조·소설·수필·희곡·아동문학(동시, 동화)·평론 등의 문학 분야 창작 및 발간

- **(단체)**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개인)**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복지카드 등 장애유형이 표기된 증빙자료)
 - 다음의 제출 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 ※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 —∟ (30 142 1220 1 111 11
분야	개인 예술가 제출자료
공연예술	- 연극·음악·무용·다원예술 등 공연예술 창작 및 발표 동영상 파일 (3분 이내) - 개인 발표물이 없을 경우 참가 작품 동영상 파일 (3분 이내)
시각예술	- 전시도록 또는 작품집 제출 - 전시도록 및 작품집이 없을 경우 이미지파일로 10점 내외 제출
문학	- (개인작품이 있는 경우) 작품집과 지원받을 창작 원고 제출 (작품집 제출 원고는 개인 작품이 없는 경우와 동일) - (개인작품이 없는 경우) <u>아래 해당 원고</u> 제출(문예지 발표작 가능) 시·시조·동시: 7편 / 수필: 5편 / 단편동화: 2편 / 단편소설·희곡·평론: 1편 / 중편소설·중편동화: 1편 / 장편소설·장편동화·장막희곡: 원고 일부(원고지 100매 분량)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예술의 기획·창작·역량강화를 통해 대표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여 특성화된 장애인예술 콘텐츠 발굴 도모

사업내용

- 장애인의 정체성, 감수성을 담아내는 기획·창작·협업 예술 프로젝트
 - 장애인 예술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 및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가와의 협업 등을 통한 융복합적 실험 프로그램. 고유 레퍼토리 개발 등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가(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 (단체) 최대 10천만원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원

- (**단체**)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 제출자료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참고사항

• 사업기간 : 다년간(2년) 지원으로 1차년도 성과 평과 및 2차년도 지원금 확정 심의를 통한 2차년도 지원 여부 확정 (2022년 2월 예정)

• 추진절차



- 본 유형은 심의 및 사업 운영 시 국내·외 전문가의 사업내용 조정 및 컨설팅을 운영하며 전문가의 제안 및 협의에 따라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조정(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결정함
-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유형에 최종 선정된 단체의 경우 지원사업 수행 희망 시 타 유형 사업은 포기하여야 함(중복지원 배제)
- 1차년도 성과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삭감될 수 있음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권 신장

사업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음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시각예술, 문학)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 비장애인 예술단체 (개인 신청 불가)

지원규모

● 최대 4천만 원

지원분야

- 장애인 대상의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발표 사업
 - ※ 비장애인 예술단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장애인 단체가 주체이거나 장애인을 대상(참여자, 향유자)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함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러뮤니티 예술 활동 지원

사업목적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자조모임의 예술 활동 등 커뮤니티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사업내용

●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및 자조모임 등 커뮤니티의 예술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동호회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모임 등 커뮤니티(개인 신청 불가)

자조모임: 관심이나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 본 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모임을 지원함

지원규모

● 최대 1천만 원

지원분야

- 장애인 예술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 및 체험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자조모임 등 커뮤니티의 예술 실습 및 체험, 역량강화 워크숍 등 예술 활동 사업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동호회) 장애인 구성원의 복지카드 사본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예술가 육성

사업내용

- 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 장애인 예술가, 강사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 비장애인 예술단체 (개인 신청 불가)

지원규모

● 최대 4천만 원

지원분야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교육·실습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유형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시청각 장애인 교안 개발 등)
- 발달장애인 예술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 사업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기획공모 사업유형별 상세 안내



장애인 미술행사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미술행사의 발전을 위해 공모내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미술행사 발굴 및 대표 사업으로 육성
- 다양하고 광범위한 장애인미술가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전시, 유통, 교류의 활성화를 기획하는 행사
 공모 및 지원

사업내용

- 장애인 미술가의 발굴, 육성, 교류 등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시, 교류, 유통행사 지원
- 사업의 기획과정, 운영과정, 행사구성을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미술행사 발굴 및 지원
 - ※ 기 장애인 국제교류전, 장애인 아트페어 등을 참고하되 기존 사업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롭고 참신한 장애인 미술행사 지원 요망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비장애인 예술가(단체) 신청 불가)
 - ※ 장애인 미술 전문 단체가 아닌 경우, 미술 전문 단체 및 기획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하며 컨소시엄 계획 및 협력 범위를 신청서에 상세히 기술

지원규모

- 총 4억 3천만 원
- 사업당 최소 1억 원 ~ 최대 3억 원 이내 지원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장애인 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 ※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지원 사업

사업목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보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문화 향유권 신장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점자 등 정보 콘텐츠 제작(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가공 및 변환) 배포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비장애인 예술가(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 최대 1억 원

지원신청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장애인 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참고사항

- ※ 사업계획 수립 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 전문성 있는 콘텐츠 기획·제작 및 구체적 보급 계획 수립
 - 콘텐츠의 기획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기간별 구체적 제작 일정 및 활용 계획 수립
-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수요 파악 및 구체적 보급(배포) 방안 마련
- 환류방안(만족도 조사 실시 등) 마련 등 자체 모니터링 계획 수립

장애인 특성화 축제

사업목적

- 축제의 참여를 넘어 장애인의 주체적 역할을 확장함으로써 참여도 증가 및 축제의 질 향상
-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및 예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한 특성화 축제 지원

사업내용

●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가(단체) 신청 불가)

지원규모

- 총 1억 9천 5백만 원
- 최대 1억 원(2~3개 사업 선정 예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 장애인 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 ※ 모든 증빙자료를 '지원신청서' 내에 첨부

지원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 ※ 사업계획 수립 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 장애인 예술 관련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운영 인력 구성
- 전문성 있는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구체적 운영 계획 수립
 -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기획
 - 접근성, 참신성, 전문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배리어프리 운영의 구체적 계획 및 방안 모색
 - 참여 단체 및 프로그램 선정 기준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축제 진행 시 발생하는 변수에 따른 안전대책, 관람객 운영방안 등 대응 방안 마련



▶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 ②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신규신청의 경우)
- ③ 사업 주관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클릭

- ④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에서 신청분야 클릭
- ⑤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첨부
- ⑥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버튼 클릭 및 '나의 신청현황' 확인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지원신청서(별도 양식)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하고, 책자 등 온라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선정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공통)

- 지원신청서 (한글 파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
- 사업유형별 신청 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사업별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사업유형별 필수 제출 자료는 「사업유형별 상세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지원 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등 관계법령 준수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해야 함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항목

- 대표자 및 상근직원의 급여성 인건비(단, 사업 내에서의 역할(기획, 연출 등)에 대한 사례비는 편성 가능)
-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화설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자본적 경비 및 운영 경비
- 행사 기념품 구입비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 위 항목 중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사전에 승인한 사업 예산 항목의 경우는 제외함

지원신청 부적격자(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및 소속 단체, 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주목적이 순수 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주식회사
-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 〈제16조〉의 보조금 교부조건 적용대상 단체

- 2020년도 지원대상으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단, 코로나-19로 인해 시업을 포기한 경우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20년도까지의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기존 사업 참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집행기관)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관계 법령 및「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개인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예외사항은 사업유형별 상세안내문에 적시함.

지원신청 제한

-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가 및 단체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하는 2021년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사업(정기공모 및 기획공모) 내에서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최대 2개 사업까지 가능. 단, 사업 내용은 상이한 내용이어야 함.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고, 문예진흥기금, 지역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택일하여야 함.
- '2019-2020년 유망 예술 프로젝트 지원'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단체는 2021년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유형에 지원을 제한함. (연속 지원 제한)
- '2019-2020년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유형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을 제한함.
- ※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선정 후 발견될 경우, 사업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심의 결격사유 안내

- 타 사업유형 지원(NCAS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심의 시 결격처리 됩니다.
-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함

▶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지침) 불가피한 사업 변경 및 사업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유연성 있는 사업운영을 지원합니다.
 - 결과물 발표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기존의 방법 외에도 과정의 영상화, 비대면 발표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합니다.
 - 사업계획 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개인도 변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며 안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장애인 인권 존중) 지원신청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대한 서약서 및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서약서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 도입되어, 이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세부 지침은 추후 선정단체에 안내 예정입니다.
- (상해보험 가입의무 확대) 지원금 내 상해보험 편성을 지원하여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회계검증 제도 안내) 지원금 집행 및 정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원금 집행·정산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 총 사업비 5천만 원 이하의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장문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 절차에 따라 회계검증을 수행하며, <u>총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지원사업의 경우</u> **사업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를 책정**하여 장문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지급하고 정산 절차에 따라 회계검증을 수행합니다.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예시)

사업규모	수수료
5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2억원 ~ 3억원 미만	920,000원

▶ e나라도움 사용안내

〈e나라도움〉

●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절차별 사용 시스템 안내

구분	지원신청~결과발표								
단계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심의 ▶ 결괴								
(기간)	(~1월 29일) (~ 3월 초)								
사용 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비고	국가문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확인							

구분	사업등록~집행 및 정산								
단계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교부 및 사업진행 ▶ 정산·결과보고								
(기간)	(사업개시1~3개월 전) (~ 12월)								
사용 시스템	e나라도움								
비고	교부신청서는 담당자 메일 로 제출하며 제출 후 담당자 확인 및 컨설팅 진행 사업추진 중 현장 모니터링 진행								
	연 1회 지원사업 활성화 워크숍 진행(정산 안내 등)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처

전화: 1670-9595, 02-6676-5100

● 온라인: www.gosims.go.kr 묻고 답하기 게시판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 해당 내용은 20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세목	용도		집	행기준		집행방법
목-세목		작입금 • 세미나 발표사례비 (주제발표 사 회 지정토론	- 번호, 주소 및 연 용(항목), 금액 등 산출기준(원고료 구 분 자	라처), 심사일자, 심의을 명확히 기재한 자 이중 지급 불가) A 급 B 급 A 급 B 급 A 급 B 급 A 급 B 급	면(자문)내용, 출강시간, 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	집행방법
일반 수용비	주제발표, 토론자사례비, 사회비, 강의료, 심사료, 자문료, 조사분석 등	연구기관·정부투자 사하여 15년 이상의 항목에 준하는 인시 - B급 : 대학원 및 대	공무원, 언론기관·전문 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 비룬 전문가, 기타 위 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보목에 준하는 인사 * 가 (시간)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계좌이체		
		일반 강의 (주 강사) 실습 지도	C 급 동일 시·5 타 시·도' (보조 강사)		70,000원 80,000원 50,000원	
		※ 등급 적용기준 - A급, B급 : 세미나	발표사례비 등급학식과 전문 지수 (원고료, 자문료 주소지-교육장소 지도검색 활용 2	이 있는 자로서 'A'급 등과 이중지급 불가) 간 거리 기준 거리계산	급 및 'B'급에 해당되지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구	분	단 기	ŀ			비고		
			A급	45,000)원		u = /0 <i>c</i>	>=u/□=1==1	40 . 조기과	
		일반	B급	40,000)원				12pt, 줄간격 좌우여백 2cm)	
			C급	35,000)원	10070, 00171 00111 2.00111, = 1 1 20111				
		특별	기획	적정 적용			예술원고	사전 협의 표	필요	
	※ 등급 적용기준 - A급: 자료 조사·정리, 기본통계와 결과분석, 심층해석 및 추진방안(건의) 제시 - B급: 자료 조사·정리 및 기본통계, 분석 - C급: 단순 자료 조사 및 정리									
		명확	사항(성) 히 기재 임금 집	한 지급내역	^호 , 주소 ^역 서를 [:]	: 및 연락처), 작성 후 계조	근무기? } 입금	간, 사례내용(\$	항목), 금액 등을	
			구분	ļ	5	단가(일)		비고	1	
	기타 사례비	국_	단순시	무보조		60,000원			연도의 노동부	
	(행사신행요원 일용임금 등)	(영사신영요원 ၂၂ ㅠㅜ .				70,000원	고시 : *중식다	최저임금을 준 포함	수함	계좌이체
		해 외	행사업	무보조		JS\$80이내 (기존 200) *해외사업 적용				
									경우 주휴수당 및 을 준수해야 함.	
			H), 금액					^호 , 주소 및 연 성 후 계좌입	[락처), 사례내용 금	
		구 분 단 가 (명)						가 (명)		
	- 10111			좌	담 회	담 회			100,000원	ᅰᄑᅜᆜᆒ
	회의비	자문회의				심층 자문			200,000원	계좌이체
			시正포			일반 자문			100,000원	
					거마비	<u> </u>			50,000원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에 ^C • 최종	배하여 7	지급하며, 일 제출된 원고	실반적인		일고에 다	남성한 전문분0 배한 지급 자저	i의 창의적 논문 	
	원고료, 교정		구	분		단 가		기	준	
	및 윤문 감수료	국문	-	자료원고 일반원고		8,00 10,00)0원)0원	200자원	고지 1장	계좌이체
		-	-	= [별/취재		10,00				
			 외국(50,00		A4 1징	t(25행)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국 어 4,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참조 : http://www.hufscit.com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친 과다 인쇄금지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 보조금 전용카드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МЫ	국내여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 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 • 목적 외 인력에 대한 여비지출 불가							
여비	국외여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해외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 2등 정액 기준 • 사업필수 경비 및 인원에 대한 비용만 인정							
임차료	대관료 임차료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보험료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7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목/세목	항목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증빙방법	비고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식사비 (다과비)	1인 기준 : 최대 30,000원	카드 집행	1. 카드영수증 2. 상세내역서	 지원금 예산액 대비 편성 지원금 1천만원 이하(5% 이내) 지원금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 이내) 지원금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 이내) ※ 세부 편성은 장문원과 협의
여비/ 국외 여비	항공료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	계좌 이체 카드 집행	1. 입금확인증 또는 카드영수증 2. 인보이스 3. E-티켓 4. 여권사본 5. 여권사증 (출입국증명면) 또는 탑승권	 장애인예술가 국제사업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항 공료 1~2급 장애인예술가 활동보조인 항공료 보조 교 통비
- Till	참가자	프로그램 장애인 참가자 대상 (실비기준)	계좌 이체 카드 집행	(계좌이체) 1. 입금확인증 2. 영수증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참가자 교통비 지원 장애인 콜택시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교통수인용(사업 참가자에게 영수증 수령 후, 해당금역
	교통비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승차권 등	만큼 계좌이체)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현장 학습비	프로그램과 연관된 공연, 전시 등의 입장료	계좌 이체 카드 집행	(계좌이체) 1. 입금확인증 2. 견적서 3.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상세내역서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전담 인력비	한시적 채용 인력비	계좌 이체	1. 입금확인증 2. 근로대장 3. 근로계약서 4. 원천징수영수증	• 지원금 10% 이내 편성 가능 • 청각장애예술단체는 수회통역사 전담인력 1인 추 가 지원(편성기준 상동)
운영비/ 일반 수용비	활동 보조 인비	보건복지부 활동보조비 단가	계좌 이체	1. 입금확인증 2. 활동보조인 자격증 4. 원천징수영수증	• 활동보조인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없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점역비	조달청 단가에 기준함	계좌 이체	1. 입금확인증 2. 견적서 3. 전자세금계산서	
운영비/ 일반 수용비	수화 통역비	1시간 100,000원	계좌 이체	 입금확인증 수화통역사 자격증 원천징수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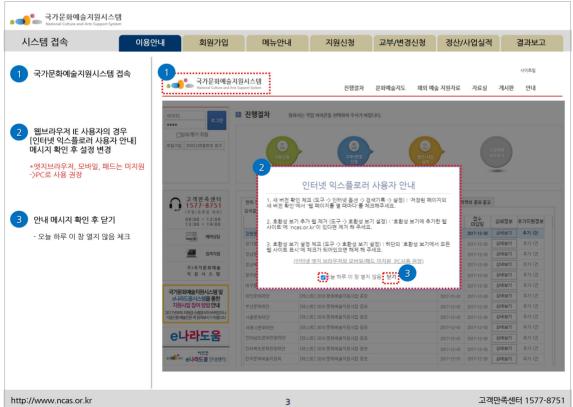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NCAS)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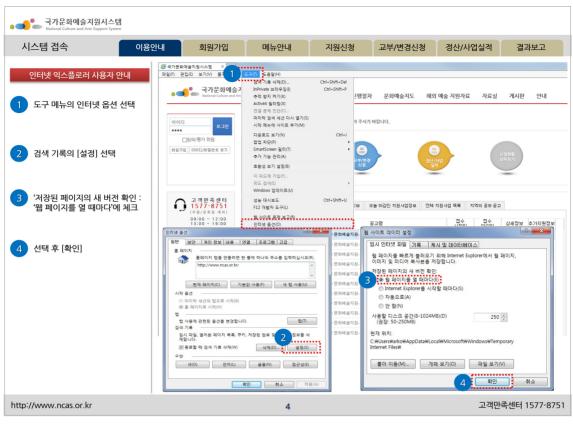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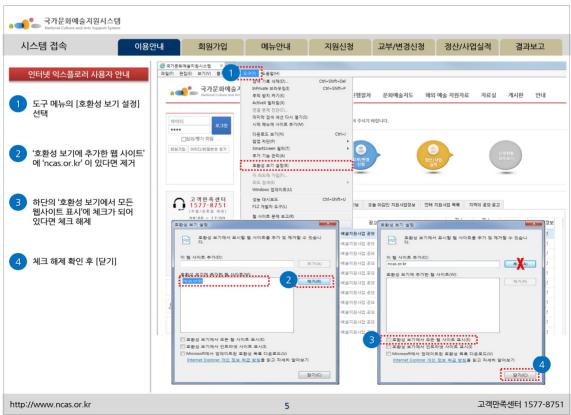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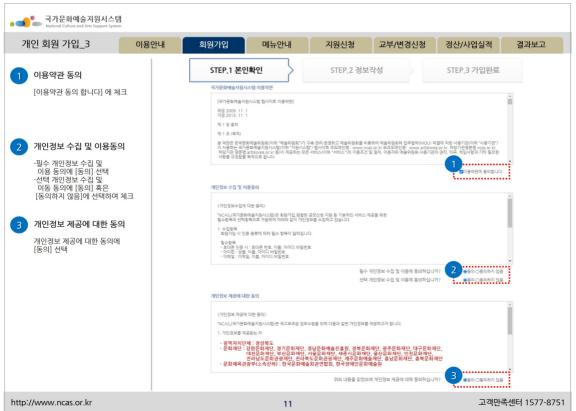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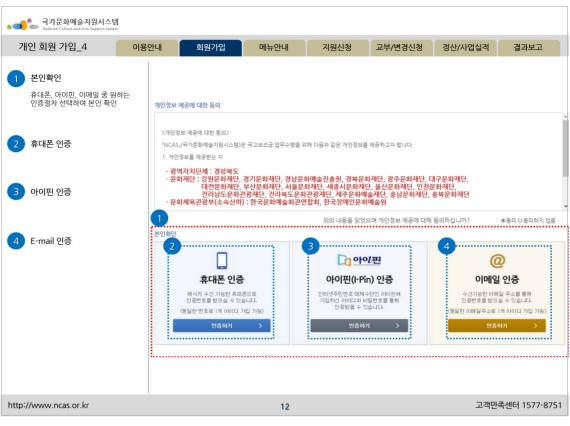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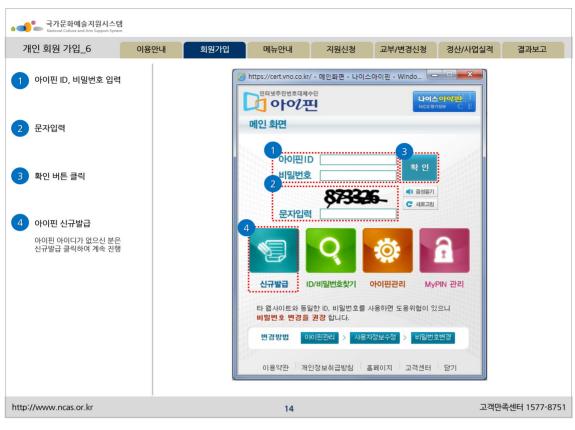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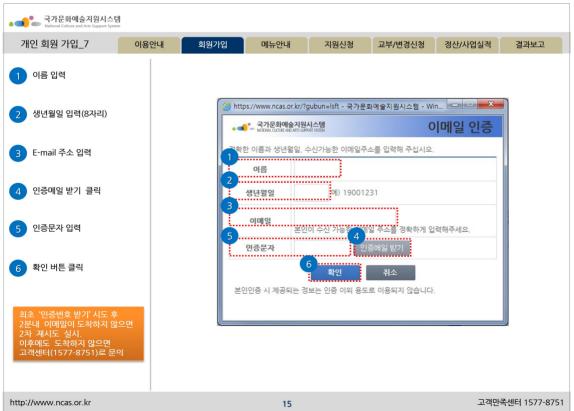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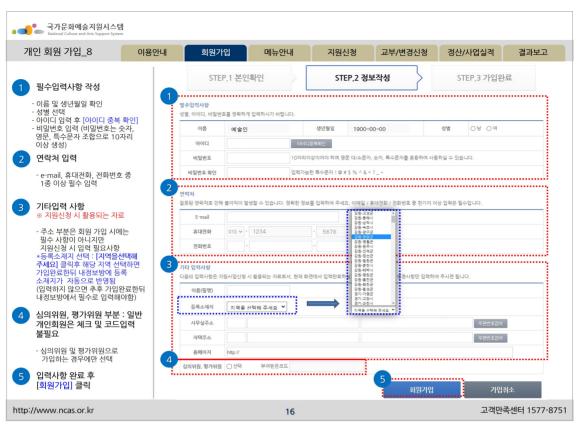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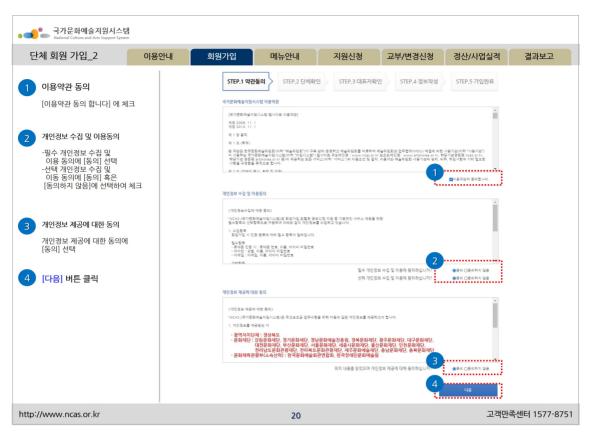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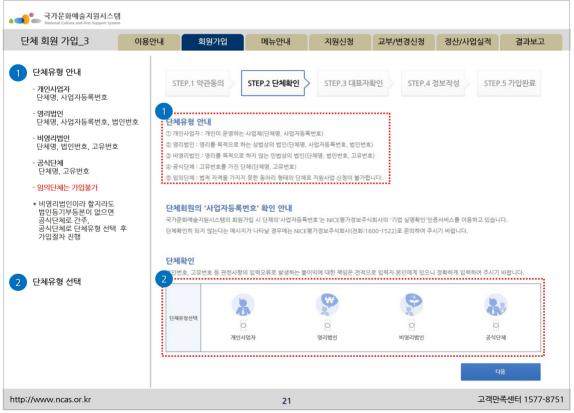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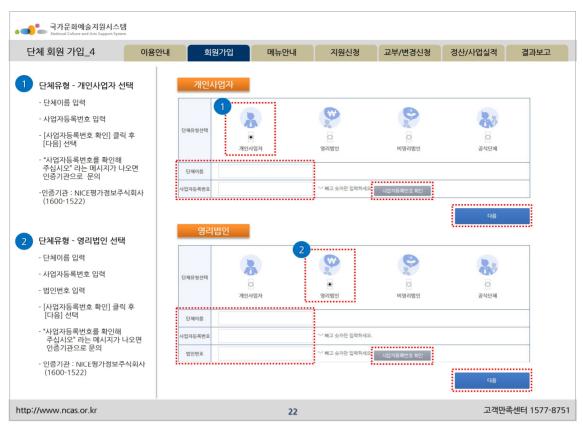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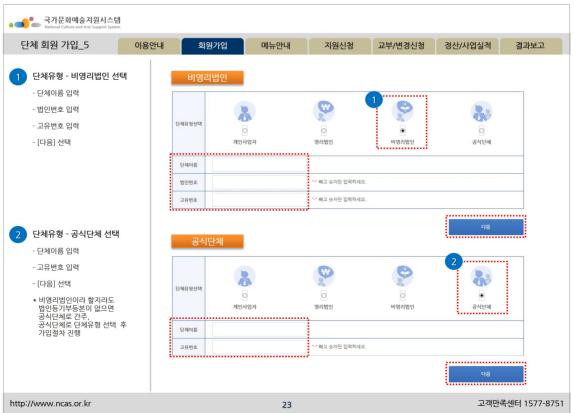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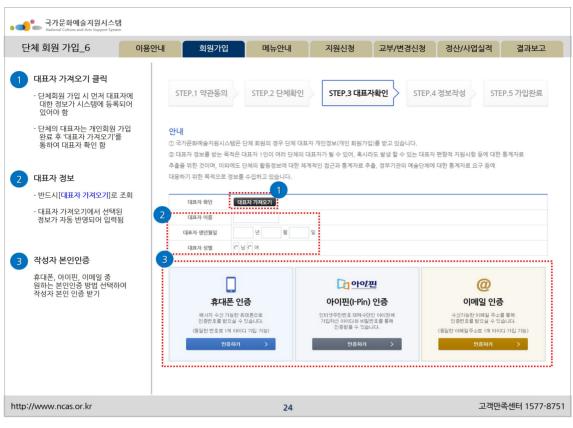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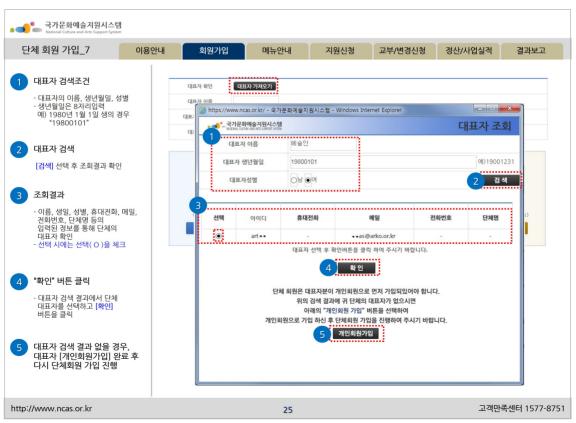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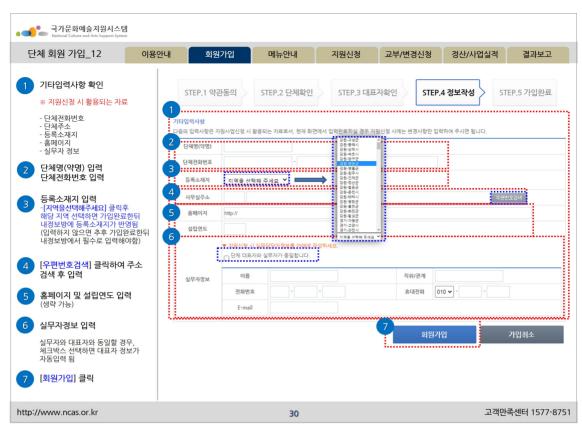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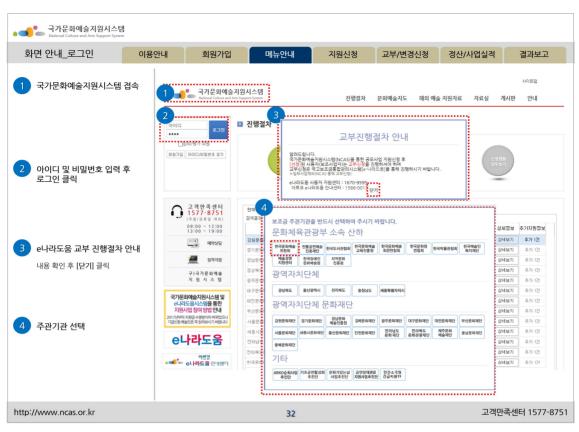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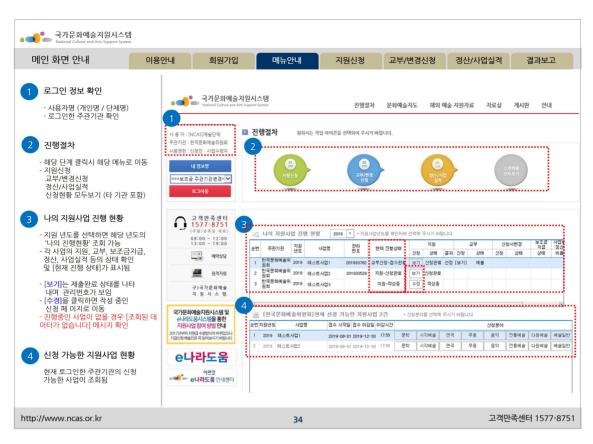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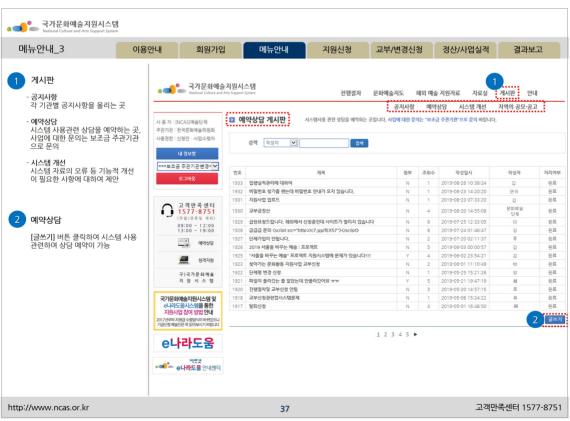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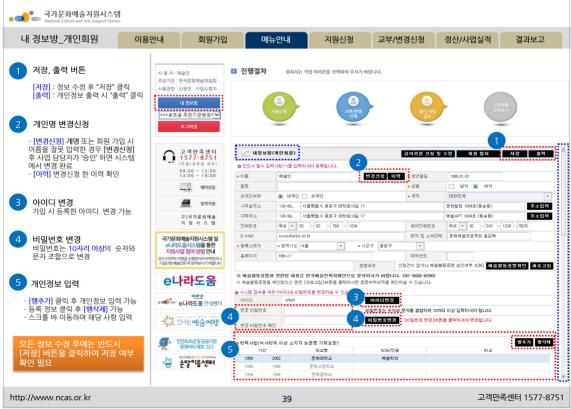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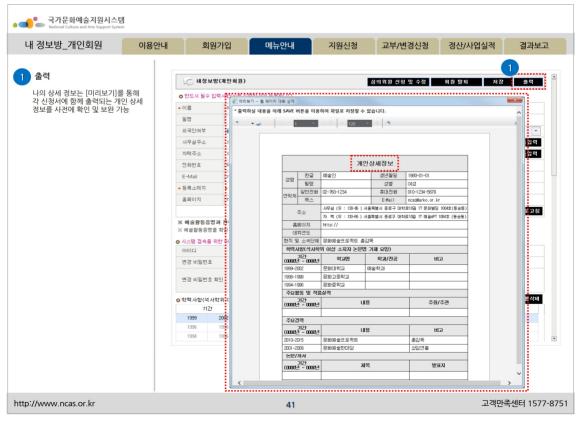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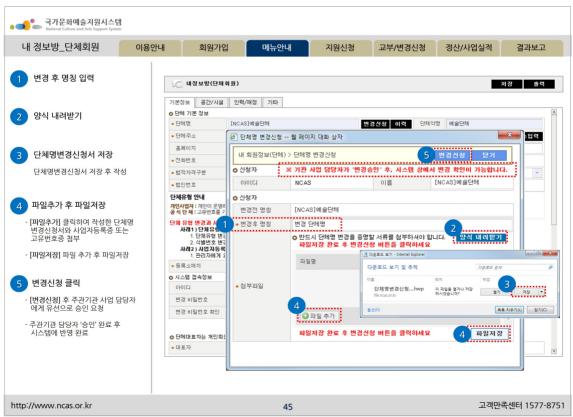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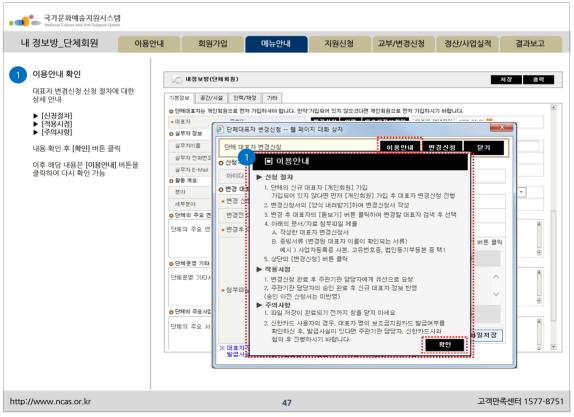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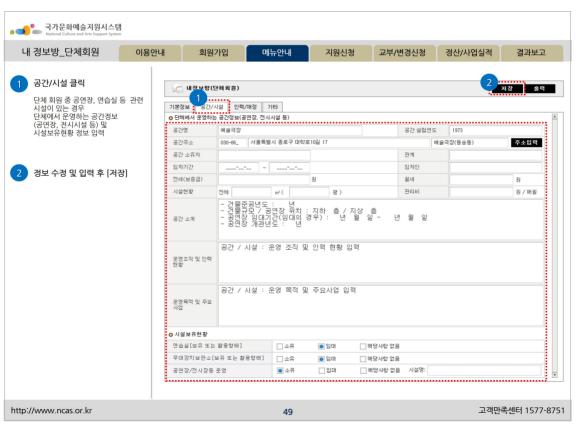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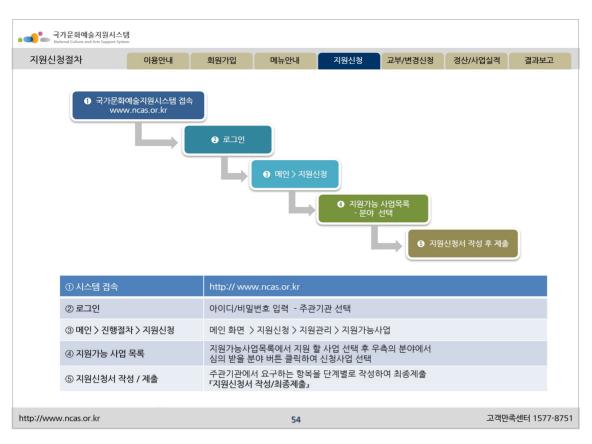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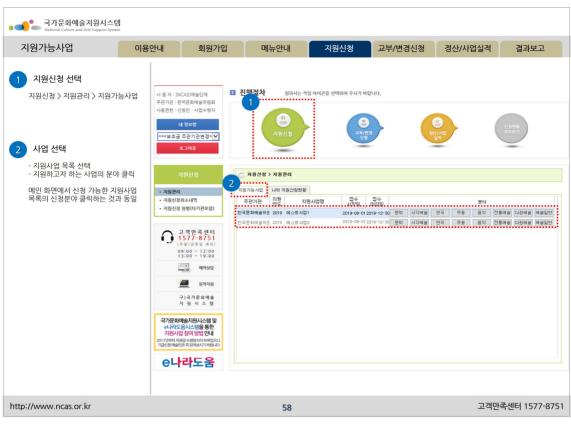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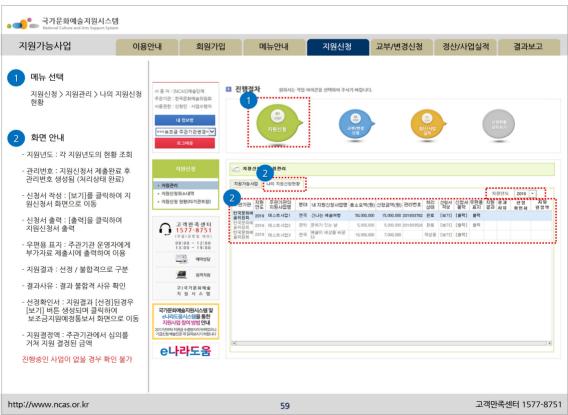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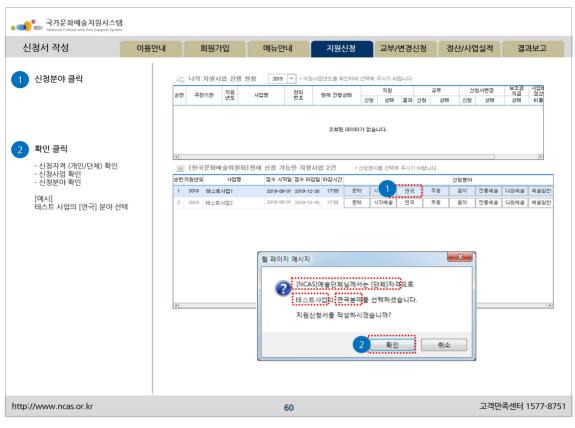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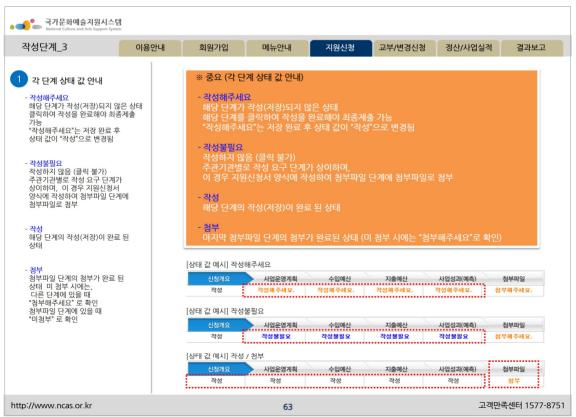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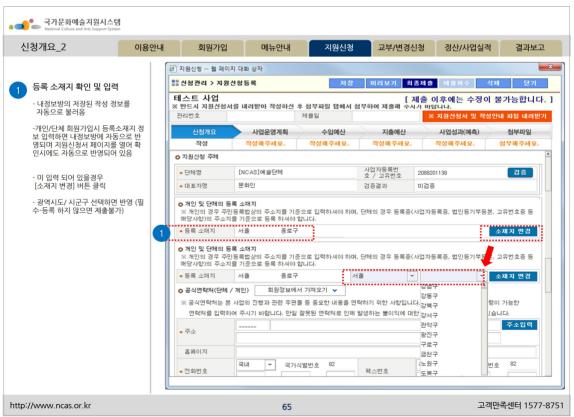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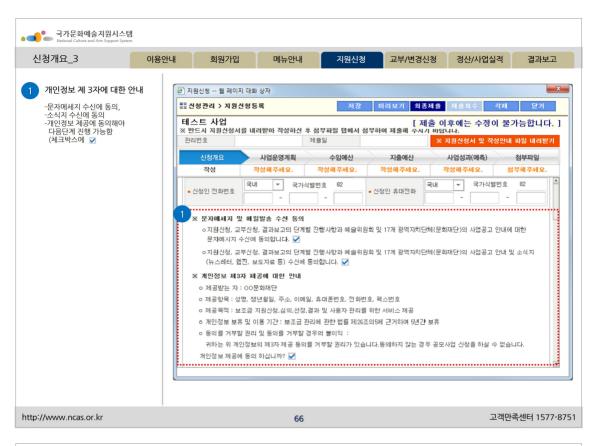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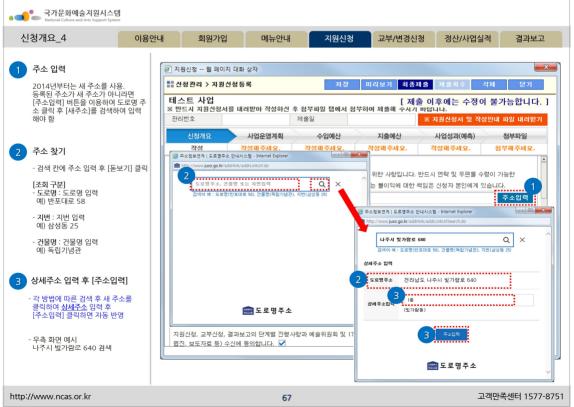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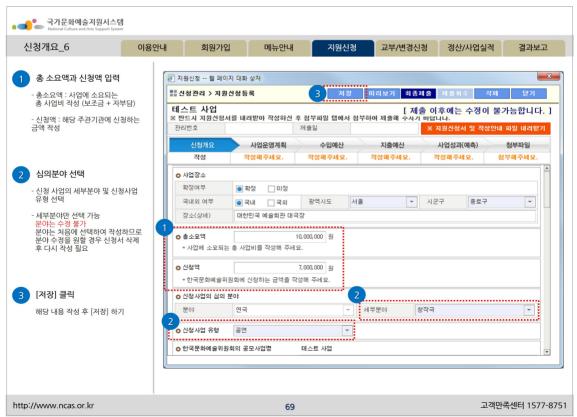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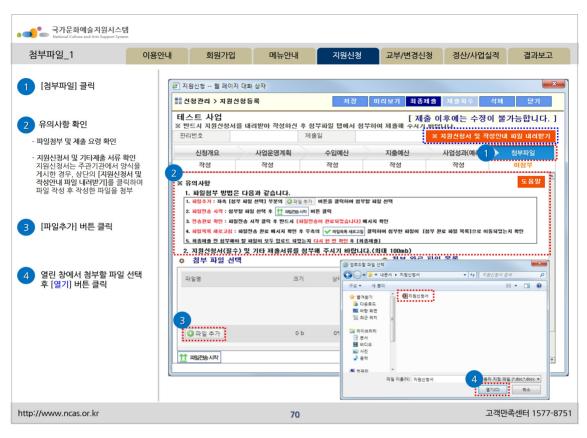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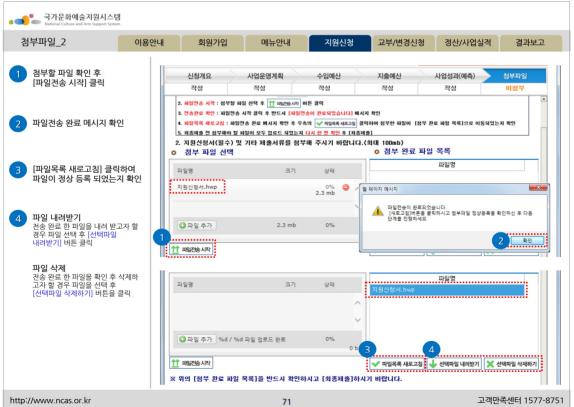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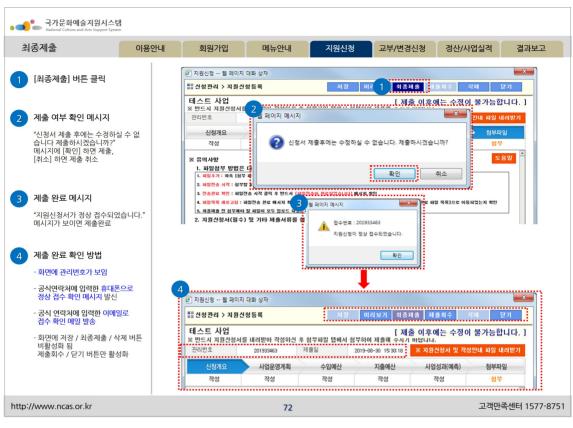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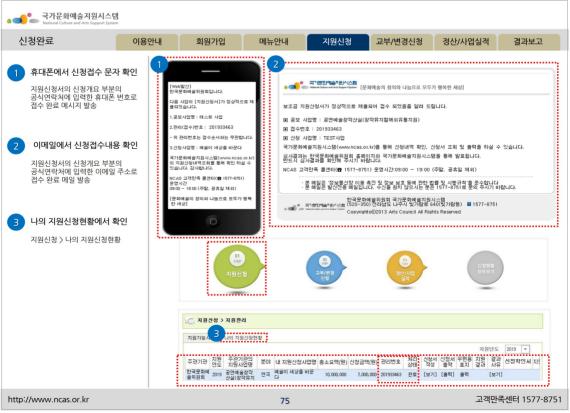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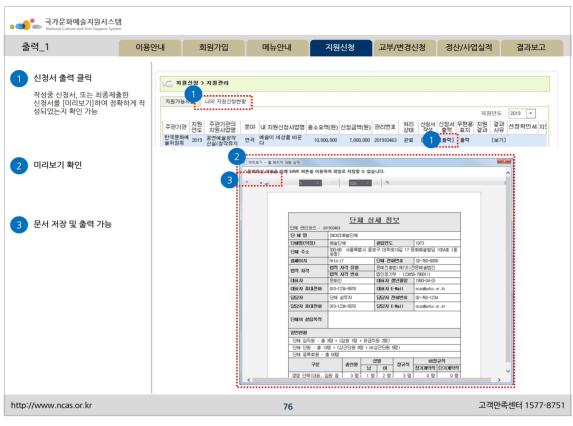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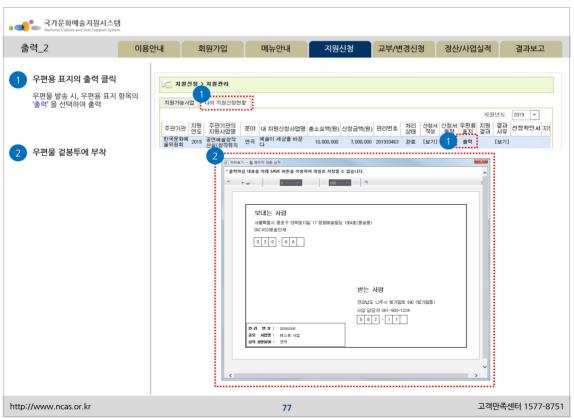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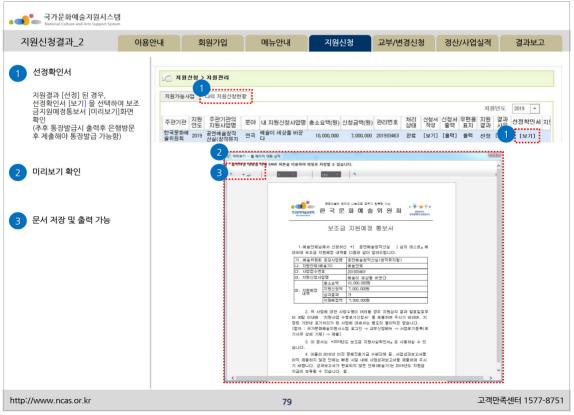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O1 어떤 시스템을 어느 시점에 써야하나요?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확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해 가능하며, 교부 및 정산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단체를 위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Q2 모든 예술단체가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다수의 예술지원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하므로, 이전에 다른 기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단체는 다시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내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먼저 대표자 명의로 개인회원 가입을 하신 후 단체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예술단', '한국 장애인 예술단'으로 띄어쓰기가 반영되어 여러 개의 단체로 가입되어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완료했는데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신청접수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제출]버튼을 누른 뒤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출회수] 버튼을 눌러 지원신청서를 회수하여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신청관리]-[지원관리]-[나의지원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작성 도중 정전 또는 컴퓨터 오류로 신청화면이 갑자기 닫혔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다 사라진 것인가요? 그럼 만약을 대비해 한글파일에 미리 작성한 후에 각각 항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는지요?

중간 저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입력하신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작성하시는 중간 중간 저장을 하시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에 미리 작성하신 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수문자나 표 등의 경우에는 붙여넣기 과정에서 일부 깨지거나 잘릴 수 있으므로 붙여넣기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제출한 지원신청서가 잘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신청서를 출력해서 보관하고 싶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접수내역이 발송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관리]-[지원관리]-[나의지원신청현황] 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가 '완료'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작성 중'인 경우는 아직 지원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신청관리]에서 신청서 출력부분에 〈출력〉을 클릭하시면 현재까지 입력하신 신청서 내용을 출력해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06 [저장]을 클릭했는데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원신청서 각 탭의 모든 항목을 입력하셔야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지 않고 안내 팝업창이 뜨는 경우, 입력하지 않는 항목으로 이동하시어 모든 항목을 누락사항 없이 작성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Q7 단체명 또는 단체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단체명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행정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내정보방]-[내 회원정보(단체)]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Q8 첨부파일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탭 [첨부파일]에서 [파일추가]를 클릭 후 지원신청 서를 첨부하여 [파일저장] 제출합니다.

* 지원신청서 등록 시 지원신청서 파일 이름은 반드시 '2021년 세부사업명_신청단체명'으로 저장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2021년 창작 활성화 지원 000예술단, 2021년 문화예술 향수 지원 000예술단)

O9 첨부파일로 등록한 파일의 수정이 가능한가요?

마지막 탭 [첨부파일]에서 저장된 첨부파일 목록에 저장된 파일을 클릭하시고, [선택파일 삭제하기]를 누르셔서 삭제 후 새로운 첨부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Q10 여러 명이 모여 단체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체는 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하나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회계세무 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체로 신청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Q11 [신청서 수정] 사업 단체 아이디로 지원해야 하는데 개인아이디로 지원신청서를 잘못 제출했는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지원신청서를 [최종제출]하신 후 지원자격 변경(단체-)개인, 개인-)단체)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제출취소]를 눌러서 기존 신청을 취소한 후, 새롭게 다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012 [접수기간] 이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지원신청서의 제출 마감은 제출 마감일 2020. 2. 5(수) 18:00 까지입니다.

지원신청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최종제출] 버튼이 시스템적으로 자동 차단되오니 마감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신청 인원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주시면 수월한 지원신청이 가능하오 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

O1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단체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O2 개인이 장애인작가와 비장애인작가와의 공동전시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 작가를 섭외하여 전시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외적 공동 전시로는 불가합니다.

Q3 영화제와 같은 영화 관련 분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화제에 참여하시거나 영화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이 중추적인 예술가나 참여자로 활동하신 다면 타 사업과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Q4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명을 달리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업일 경우 불가하며 동일한 사업의 기준은 일자와 장소,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오니참고 부탁드립니다.

O5 공연 장소에 대한 섭외는 직접해야하나요? 공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장소 섭외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단체에서 직접 하셔야 하며 공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6 우대사항에 발달 장애인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우선 선정을 명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 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동일 조건일 경우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Q7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유사 사업이 선정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동일 사업일 경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시고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해당사업이 동일사업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Q8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동호회 사업 신청가능한가요?

동호회명으로 별도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O9 지원사업 제외대상 중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복지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지원사업 제외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도 포함됩니다.

O10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가요?

특화된 예술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O11 전년도 동일 사업을 보완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Q12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013 지원사업을 2년간 진행하였는데 연속적인 지원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가요?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014 단체증 없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신청 직전에 단체증을 만들어도 되나요?

지원신청서 내에서 활동 증명 가능하므로, 2021년 1월까지 발급 된 단체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산 편성

Q1 해외 전시 시 해외에서 발생하는 숙박비, 경비 등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국외 사업 수행을 위한 항공료, 사업필수 경비 등은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예산편성시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승인됩니다.

Q2 음반 제작에 대한 편곡, 믹싱 사례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제작비. 사례비는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Q3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때 강사 및 전담인력을 중복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강사는 각 회차 별로 사례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전담인력은 중복으로 예산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Q4 해외 개최 공연 시 최대 동반 몇 명까지의 항공료 신청가능한가요?

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인원에 대한 항공료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 1, 2급 예술가가 참여하실 때에는 활동 보조인의 항공료도 예산 편성 가능합니다. 단, 과도한 예산 편성 시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류비, 식대 편성이 가능한가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이동경비 등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식대의 경우 사업추진비로 편성하시되 지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지원금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지원금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 이내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발행인 안중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0308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동숭동, 이음)

http://www.i-eum.or.kr

디자인 DB커뮤니케이션

인쇄 경성문화사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2-760-9700

© 202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본 안내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